

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요?

공공기관		적용대상	비적용대상
행정기관		● 국가·지방 공무원 –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자체장 등 – 직업 군인 – 임기제(계약직)공무원 ●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–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– 공중보건의사, 사법연수생	● 기간제·무기계약직 근로자 ● 이장, 통·반장 ● 사병, 사회복무요원 ● 퇴직한 공무원 ●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
공직유관단체		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– 비상임 이사, 감사 –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	●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
학교	대학교	● 교직원 – 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–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–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– 대학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 등 임직원	● 겸임(초빙)교원, 명예교수 ● 시간강사('18.1.1부터 교원에 포함) ● 학생, 조교 ● 민간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등 임직원
	초·중·고	● 교직원 – 기간제 교사 –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	● 방과 후 교사 ● 자원 봉사자 ●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
	유치원 (※ 어린이집)	● 교직원 – 유치원 원장, 교사 (※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)	● 방과 후 교사 (※ 어린이집 보육교사)
언론사		●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–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– 인턴기자 – 언론사의 지사·지국 소속 직원	●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● 프리랜서 기자·작가 ● 외신기자 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(포털 사이트) 소속 임직원